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25
----------	-------

발의연월일 : 2024. 1. 30.

발 의 자 : 김도읍 · 유경준 · 권명호
황보승희 · 권성동 · 박형수
전주혜 · 윤한홍 · 조수진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2조(「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제4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제5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제6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 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2조의2(결격사유) ----- ----- ----- -----.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u> <u>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9. (생략)	제16조(결격사유)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9. (현행과 같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 2. (생 략) <u>3.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u> 4. (생 략)	제37조(결격사유) ----- ----- -----. 1. · 2. (현행과 같음) <u>3. 피성년후견인</u> 4. (현행과 같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1.·2. (생략) 3.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u> 4. (생략)	제16조(결격사유) ----- ----- -----. 1.·2. (현행과 같음) 3. <u>피성년후견인</u> 4. (현행과 같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u>3.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u> 4. ~ 7. (생략)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u>3. 피성년후견인</u> 4. ~ 7. (현행과 같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